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3,572,544	14,507,176
일반회계	475,709,597	14,271,288
특별회계	7,862,947	235,888
기타특별회계	7,862,947	235,88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48,407	13,452
지하수관리특별회계	438,183	13,145
주차장특별회계	6,623,756	198,713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352,601	10,57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사고이월사업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,923,065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10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,시비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